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03
----------	-----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에 의한 개선의견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2조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먹거리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 복지건강본부 삭제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조례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복지건강본부장)이 공석이 됨
 - 시민건강국이 신설되어 당연직 공동위원장 직책의 재지정이 요구됨
-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 신설
 - 2014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에 의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2호, 2015.6.11.)

2. 주요내용

- 가.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요건으로 성별을 고려하고, 위촉대상을 시민으로 확대(제12조제1항, 제12조제4항)
- 나.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책을 하향조정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5항)
- 다.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제1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사무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요인과 무관

(4)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여성정책담당관 검토결과 : 개선권고	성별영향평가 의견	검토의견 반영여부
조례 제9조(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따르면, 시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나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조정을 하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확대되어야 함.	제12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인원에 <u>“성별을 고려함”</u> 을 포함	반영
	④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촉위원 위촉대상에 <u>식품안전, 소비자, 학부모, 환경단체</u> 에서 <u>추천을 받은 사람</u> 을 포함	부분반영 ○ 위촉대상 사람으로 식품과 관련성이 적은 “환경단체”를 제외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 8. 13. ~ 9. 2.) 결과: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첨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실·본부장”을 “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급 공무원”을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가 중에서”를 “전문가 또는 식품안전, 소비자 및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2항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_____ _____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② _____ _____담당국장
③ 부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_____ _____과장급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명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_____ _____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또는 식품안전, 소비자 및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과장	⑤ _____ _____탐장

현행	개정안
<p>이 된다.</p> <p>⑥ (생략)</p>	<p>-----</p> <p>⑥ (생략)</p>
<p><u>〈신설〉</u></p>	<p>제13조의 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인 행	개 정 안
	<p>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p> <p>6.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2항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재정상 변동 요인 없음 (공동위원장 등 직위 변경)

4. 작성자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지태근 (02-2133-4704)